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341호(號) 1928(昭和 3)년 2월 21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3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33호(號) 시베리아(Siberia) 경유(經由) 유럽·아시아 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[歐亞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] 중(中) 1928(昭和 3)년 3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2월 2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7조(條)의2 일본측(日本側) 발(發) 여객(旅客)은 일본측(日本側) 구간(區間)을 하급(下級), 외국측(外國側) 구간(區間)을 상급(上級)으로 하는 이급연락승차권(異級聯絡乘車券)을 구매(購買)하는 것을 득(得)함. 단(但) 발역(發驛)·창춘(長春) 간(間) 및 창춘(長春)·착역(著驛) 간(間)은 각별(各別)히 동일등급(同一等級)인 것을 요(要)함.